국가의 상징과 관련한 중국의 헌법규정 및 적용

중국 상해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문혜정

2018년 10월 1일 국경절에 국기 계양식을 거행중인 천안문 광장의 모습[1)]

들어가며

중미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중국 당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 및 내부결속을 다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듯, 중국의 황금연휴라고 알려진 올해 국경절 연휴에는 중국 내 미국행 항공권의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중국에 거주하다 보면 종종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국경절

1) 자료출처: 「中广网」 http://pic.cnr.cn/pic/yc/20181001/t20181001_524375475.shtml
2) http://www.sohu.com/a/257642142_100257574

에 거행되는 국기 게양식에 참석한 중국인들의 모습이다. 2018년 10월 1일 국경절[3] 새벽 6시 10분에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기 게양식이 거행되었는데,[4] 올해는 국기 게양식을 참관하기 위해서 약 14만 5천명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든 것으로 나타났다.[5] 국경절 당일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되는 국기 게양식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가에 가지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다. 한편, 얼마 전 중국 쑤저우에서 진행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와 에티오피아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던 중, 자원봉사자가 중국 선수에게 국기를 건넸고, 중국 선수가 경기 흐름을 잃고 우승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애국심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져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중국 내 애국주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주목했고, 이 리포트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상징과 관련한 중국의 헌법 규정 및 법률 규정을 검토했다. 나아가, 일국양제(一國兩制)[6]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에서 국가의 상징과 관련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1. 중국 헌법상 국기, 국가와 관련규정

1949년 9월 27일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7]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8]가 통과되면서, 중화인

3) 1949년 10월 1일 오후 3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개국대전이 거행되었고,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탄생했음을 선포한 중국의 건국기념일이다. 1949년 12월 2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매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이자 이를 경축하는 날인 국경일로 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1999년 9월 18일 '전국법정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을 공포하고,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법정 휴일로 지정하였다. 원칙적으로 국경절 연휴는 3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국경절 연휴를 실시 중이며, 이를 국경황금주(国庆黄金周)라고 한다.

4) 중국 국기법 제5조는 천안문 광장에서 매일 국기 게양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 http://news.cctv.com/2018/10/02/ARTISweBDf29hbKz6GEZUqEC181002.shtml

6)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하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다른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회의이며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민공화국의 수도는 북경으로 하고, 국기는 홍지오성기(紅地五星旗)로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한다고 결정했다.[9]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홍지오성기의 이름을 현재 중국에서 국기로 쓰이는 이름인 오성홍기로 바꾸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2일전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국기가 채택되었음을 공표했다. 그리고, 1954년에 처음으로 중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국기, 국휘(國徽)[10],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헌법의 개정에서도 이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과 관련해서는 2004년 이전까지 중국 헌법에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의용군행진곡이 국가로 헌법에 명기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국가도 비로소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헌법상 명문화되었다. 현행 중국 헌법 제4장에는 국기, 국가, 국휘, 수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14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라고 규정한다. 제14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휘의 형태에 대해서, 제14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국가상징과 관련한 개별법률

(1) 국기법

8)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关于中华人民共和国 国都, 纪年, 国歌, 国旗的决议) 1.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평으로 정하며, 오늘부터 북평을 북경으로 개명한다. 2.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년은 서력을 채택한다. 금년은 1949년으로 한다. 3.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한다. 4.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홍지오성기로 하며, 중국혁명, 인민대단결을 상징한다.

9)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은 영화 '风云儿女'의 주제곡으로, 이 노래의 가사는 항일전쟁을 담은 내용이다. 1978년 3월 5일 중국 정부는 의용군행진곡의 가사를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지만,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가의 결의'가 통과되면서, 가사가 원래대로 복원되었다.

10) 국휘는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 중 하나이다. 중국의 국휘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다. 중국의 외교부 등 국휘법이 규정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문 위쪽 중앙에 반드시 국휘를 걸어야 한다.

중국의 국기법은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인대상무위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이 국기법을 제정한 목적은 이 법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민의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국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기법 제18조는 국기 및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 개인의 장례식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손상·난도질·훼손·짓밟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국기를 모욕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참조하여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국기법 위반과 관련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후원사였던 스포츠 브랜드 회사인 아디다스가 중국 국기의 도안을 운동 가방과 셔츠에 사용했고, 이러한 사항이 국기 및 도안을 상표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중국 국기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기에는 다섯 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뜻하며 네 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과 민족자산 계급을 나타낸다. 아디다스는 이 별 다섯 개 중 공산당을 상징하는 가장 큰 별에 아디다스의 로고인 세 잎 클로버를 새겨 넣어서 상품을 제작하여 시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아디다스 측은 사과하고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11)]

(2) 국가법

중국 국가법은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법을 제정한

11) http://group.mtime.com/bigthing/discussion/173138/

목적은 이 법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국가법은 국가의 존엄을 수호하고, 국가의 제창 및 방송과 사용을 규율하고, 국민의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했다. 중국 국가법은 국가를 제창해야 할 상황과 금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과 폐막, 헌법 선서식, 국기 게양식 등에서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 한편, 동법은 국가를 상표나 상업광고, 개인의 장례식, 공공장소에서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국가법 제8조). 특히, 이 법은 국가를 제창할 때 반드시 엄숙한 자세로 서서 불러야 하고, 불경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를 제창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애국가가 나오면 가슴에 손을 올리지만, 중국 선수들은 의용군행진곡이 나오면 엄숙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국가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 국가의 가사 및 악보를 곡해하도록 고치거나, 왜곡 및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 및 제창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 혹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범죄가 성립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한다(국가법 제15조). 2018년 10월 7일 중국의 왕홍(网紅)[12]인 양카이리(楊凱莉)는 인터넷상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 장난스럽게 불렀고, 방송 후 네티즌들에 의해서 국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2018년 10월 13일 상하이시 공안국은 양카이리가 중국 국가법을 위반했기에,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국가는 나라의 상징으로 모든 국민과 기관은 국가를 존중해야 하고 국가 존엄을 수호해야 하며, 사이버공간이 법외공간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률을 준수하고, 도덕을 중시해야 하며, 법률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거나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12) 왕홍이란 왕뤄홍런(网络红人)의 약자이며, 우리나라의 파워 블로거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단속하여, 인터넷 환경을 적절하게 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13)]

(3) 국휘법

중국 국휘법은 1991년 3월 2일 제7기 전인대상무위 제1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국휘의 존엄을 수호하고, 정확한 국휘의 사용을 위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했다(국휘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휘는 다섯 개의 별이 비추고 있는 천안문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벼 이삭 무늬를 새긴 둥근 테가 감싸고 있으며, 그 아래 중앙에 작은 톱니바퀴가 있는 도안이다. 이 도안은 1950년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국휘도안'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판공청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휘도안 제작설명'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국휘법 제2조). 이 법에서는 국휘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손상·난도질·훼손·짓밟는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휘를 모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정황이 가벼운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법규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국휘법 제13조).

(4) 중국 형법상 국가법 및 국기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 제30차 회의에서는 국가모독과 관련한 처벌을 규정한 제10차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형법 제299조는 국기법 위반 시 처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국 형법에는 국기법 및 국휘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국가(國歌)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국가법이

13) https://eulam.com/2018/10/15/194718/

정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형법 제299조에 국가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삽입하였다. 전인대에 따르면, 이번에 형법을 개정한 이유를 국가를 모욕하는 범죄 행위를 징벌하고, 국가 연주·제창·사용의 엄숙함과 국가 존엄성을 실제로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중국 형법 제2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손상·난도질·훼손·짓밟음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휘를 모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단기징역·보호관찰·참정권 박탈에 처한다.

제2항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 가사·악보를 곡해하도록 고치거나, 왜곡·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제창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보호관찰·참정권을 박탈한다.

3. 홍콩 및 마카오에서 법률의 적용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협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중국 본토는 전인대가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홍콩 및 마카오에서는 홍콩 및 마카오의 원래 법률과 홍콩 및 마카오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한다.[14] 이하에서는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상 규정하는 국가상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법과 같은 중국 본토의 법률이 홍콩 및 마카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1)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상 국가상징과 관련한 규정

중국 본토의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

14) 홍콩 기본법 제18조, 마카오 기본법 제18조.

콩 및 마카오에서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 기본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15]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에 따르면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현재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홍콩과 마카오는 입법·사법·행정과 관련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에서는 국기와 국휘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國旗)와 국휘를 게양하고 사용하며,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구기(區旗)와 구휘(區徽)도 게양하고 사용할 수 있다.[16] 국제대회에서 홍콩의 구기 및 마카오의 구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일국이라는 원칙하에 홍콩 및 마카오 선수단의 명칭은 홍콩 차이나(HongKong, China)와 마카오 차이나(Macao, China)로 표기한다. 다만, 국가(國歌)와 관련해서는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의 본문에는 규정이 없고, 부칙 제3조에서 본토의 법률인 국가법을 열거하여 홍콩 및 마카오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입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상 규정

중국 본토의 법률인 국가법 등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홍콩 기본법은 국방, 외교 및 기타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의 자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한해서, 중국 본토의 입법기관인 전인대상무위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 부칙 제3조의 법률을 추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17] 주목할 부분은,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은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전국성 법률(全國性法律)[18]은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현

15)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의 개정의 권한은 오로지 전인대에 있으며, 홍콩의 최고 법원이 아니라 전인대상무위가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16) 홍콩 기본법 제10조, 마카오 기본법 제10조.
17) 홍콩 기본법 제18조, 마카오 기본법 제18조.

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칙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법률을 홍콩 및 마카오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은 홍콩 및 마카오 정부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한 후 공포해야 한다.

(3)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에서 전국성 법률의 적용절차

예컨대, 전국성 법률인 국가법이 홍콩 및 마카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 제29차 회의에서 국가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 전인대상무위는 법정 절차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의 기본법위원회와 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고,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 제30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 국가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통과시켰다.[19] 전인대의 설명에 따르면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 국기, 국휘 및 국가의 사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20]을 제정 및 공포하여 실시 중이지만, 국가법이 기본법의 부칙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고, 홍콩은 국가의 사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인대는 홍콩은 최근 국가(國歌)를 존중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홍콩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 국가법을 포함하여 현지에서 입법하여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아래 전인대상무위에서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 전국성 법률인 국가법을 포함시키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해야 한다.

---

18) 전국성 법률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가 제정한 법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최고 국가권력기관 혹은 기타 상설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전국성 법률은 원칙적으로 중국 본토에서만 적용되고, 홍콩 및 마카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http://www.npc.gov.cn/npc/xinwen/2017-11/04/content_2031434.htm

20) 《国旗、国徽及国歌的使用及保护》的法律（第5/1999号 法律）

(4)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현황

마카오의 경우는 마카오가 포르투갈에서 중국에 반환될 때 '국기, 국휘 및 국가의 사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5/1999호'를 제정하여 이미 국기 및 국휘, 국가의 사용 및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법과 관련한 현지 입법 작업은 상술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8월 13일 마카오 입법회에서 상술한 법률을 보완하여 개정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8년 8월 14일부터 마카오에서 시행중이다.[21)]

홍콩에서는 중국의 국가법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홍콩 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건제파(建制派, Pro-establishment)는 이 법의 적용을 지지했지만, 민주파(民主派, Pro-Democracy)는 공산당이 국가법을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2)]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에서 홍콩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 전국성 법률인 국가법을 포함시키는 안건이 통과된 이후, 2018년 3월 16일 홍콩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 입법회에 국가법의 홍콩 현지입법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한 상황이다.

나가며

국기, 국가, 국휘, 수도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를 식별하는 표시이다. 중국의 경우 홍콩 및 마카오가 반환되기 전에 이미 헌법에 국기, 국휘, 수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를 반환과 함께 제정한 홍콩 및 마카오 기본법을 통해서, 중국의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도, 특별행정구의 상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중국 본토의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

21) http://www.fdcew.com/fgwk/fgam/6515_2.html

22) 2015년 홍콩의 몽콕 경기장에서 개최된 중국과 홍콩 간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서 홍콩의 응원단들이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냈고,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국가·인종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홍콩축구협회에 벌금 4만 홍콩달러를 부과했다. https://eulam.com/2018/10/15/194718/

하나의 국가라는 전제하에 특별행정구에서 본토의 상징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세우되,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상징도 인정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될 기본법을 제정할 때, 특별행정구의 상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경에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될 당시 이미 중국 헌법상 국가의 상징과 관련한 규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술한 부분을 향후 북한과 통일문제에 비추어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상징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중국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는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영토의 반환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통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 상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만 하다.